

◎ 일시 : 2026. 9. 8.(화) 16:00~17:00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자료

- 목 차 -

☐ 안건심의

- ①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 ② 2026년 3분기 진행 사업 및 4분기 예정 사업 심의

☐ 보고사항

- ① 2026년 3차 추경예산(안) 보고
- ② 2026년 후원금(품) 보고 (1월~7월)
- ③ 2026년 비품폐기 현황 보고(3분기)
- ④ 기타 안건 심의

☐ 안건사항 1 :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 2026년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개정 요구(안)

☐ 개정사유

- 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수정 필요.
-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한 수정 필요.
- 3) 자녀돌봄휴가 및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2026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개정으로 인해 수정 필요.
- 4) 경기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부천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휴가제도 개선안의 마련으로 수정 필요.

☐ 개정요구(안)

- 복무규정 제11조(근로시간) : 4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휴게시간 적용에 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사전에 반영하고자 함.[시행일: 2026.12.10.]
- 복무규정 제21조(연가계획 및 휴가) : 시간단위의 휴가 신청에 대한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을 사전에 반영하고자 함.[시행일: 2027.06.10.]
- 복무규정 제25조(출산전후휴가 등) :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자 함.
- 복무규정 제26조(일·가정 양립 지원)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관련 법률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자 함.
- 복무규정 제30조/제31조(가족돌봄휴가) :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개정으로 병합하고자 함.
- 인사규정 제6장 제35조(포상과 징계) : 부천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휴가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어 준수하고자 함.

☐ 관계법령 등 발췌서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0조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 2026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안내서
- 2026년 부천시 사회복지시설 등 종사자 유급휴가제도 개선(안) 세부기준 안내서

☐ 예산 수반사항 : 없음.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 (안)
복무규정 제11조(근무시간) ①~⑥ 생략 <u><신설></u> <u><신설></u>	복무규정 제11조(근무시간) ①~⑥ 생략 <u>⑦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일: 2026.12.10.]<신설 2026.09.08.></u> <u>⑧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6.09.08.></u>
복무규정 제21조(연가계획 및 휴가) ①관장은 직원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1회의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직원은 개인별 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장의 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u>③<신설></u>	복무규정 제21조(연가계획 및 휴가) ①관장은 직원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1회의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직원은 개인별 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 외출, 조퇴 등의 방법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장의 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한다. <u>③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시행일: 2027.06.10.]<신설 2026.09.08.></u>
복무규정 제25조(출산휴가) ①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임신 중인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한다. <u>③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u>	복무규정 제25조(출산전후휴가 등)<개정 2026.09.08.> ①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임신 중인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한다. <u>③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6.09.08.></u>
복무규정 제26조(임산부의 보호 등) 임산부 보호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u>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 허용, 난임치료휴가 부여 등 모성보호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u>	복무규정 제26조(일·가정의 양립 지원) 임산부 보호규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삭제 2026.09.08.> <u>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6.09.08.></u>

현행	개정 (안)
복무규정 제30조(가족돌봄휴가)	복무규정 제30조(가족돌봄휴가)<삭제 2026.09.08.>
복무규정 제31조(자녀돌봄휴가)(유급) ①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및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② 자녀돌봄 대상(고등학교 이하) 자녀에 대해 연간 3일(3명 이상 4일)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연간 4일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 ⑤ 사용기준 1.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 설명회, 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2. 어린이집, 학교 휴원·휴교 * 감염병 확산에 따른 돌봄 필요시 3.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 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 자녀 돌봄 휴가 승인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격리통지서,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확인	복무규정 제31조(가족돌봄휴가)<개정 2026.09.08.>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직원의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 등 가족의 돌봄을 위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자녀를 둔 종사자 및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삭제 2026.09.08.> 1. 정규직 및 기간제 종사자(시설장 포함)<신설 2026.09.08.> ② 유·무급 포함 연간 10일(미성년자 및 장애인 자녀 돌봄만 유급휴가)<개정 2026.09.08.> 1.유급휴가(3~4일) : 고등학교 이하 자녀, 장애인 자녀 돌봄에 연간 3일 유급휴가 ※ 자녀 3명 이상, 장애인 자녀 및 한부모 종사자는 연 1일 가산 2.무급휴가(유급 포함 10일 이내) :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포함), 배우자 유급휴가 미대상 자녀,손자 등 가족의 돌봄이 필요할 경우(지방공무원 규정 준용) 3.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 분할사용 가능, 종사자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 가능 ※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은 무급 가족돌봄휴가(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 사용) ③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의 경우 자녀가 1명이더라도 연간 4일을 부여할 수 있다.<삭제 2026.09.08.> ④ 종사자가 부부일 경우 각각 사용이 가능하다.<삭제 2026.09.08.> ⑤ 사용기준<개정 2026.09.08.> 1.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 및 손자녀의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 질병 등에 따른 돌봄 필요시 2.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학교 공식 행사 3.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교, 방학 등 돌봄공백 발생 시 * 유급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온라인 수업 증빙서류, 병원 진료여부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

현행	개정 (안)																		
인사규정 제6장 제35조(포상과 징계) 제35조 (포상) 관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직원과 외부인사로서 복지관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①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②복지관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때 ③사회복지 사업에 우수한 연구 실적이 있을 때 ④경비절감과 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제안을 하였을 때 ⑤장기근속휴가 1. 장기근속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 5일간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2. 장기근속자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 직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3. 장기근속자 중 20년 이상 30년 미만 직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4. 장기근속자 중 30년 이상 경과한 직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한다. 5.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현 소속시설 재직자 적용, 10년 이상 종사자는 현 근무시설 5년 이상과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경력 합산 가능하다. 6. 근속기간(5년, 10년, 20년, 30년) 도래 후 다음일부터 다음 장기근속 휴가 발생일 이전까지 휴가를 실시한다. 7.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를 제공하며 휴가 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8. 장기 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 장기휴가 적용시 경력합산은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⑥기타 관장이 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사규정 제6장 제35조(포상과 징계) 제35조 (포상) 관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직원과 외부인사로서 복지관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①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었을 때 ②복지관의 발전에 공이 현저한 때 ③사회복지 사업에 우수한 연구 실적이 있을 때 ④경비절감과 사업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제안을 하였을 때 ⑤장기근속휴가 <u>복지관은 근속기간에 따라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사용방법은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및 부천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휴가제도 개선안을 따른다.<개정 2026.09.08.></u> <u>1.근속 기간에 따른 유급휴가제도는 1~15일 사용가능하다.<개정 2026.09.08.></u> <table><tr><td>근속기간</td><td><u>1~5년 미만</u></td><td><u>5~10년 미만</u></td><td><u>10~20년 미만</u></td><td><u>20~30년 미만</u></td><td><u>30년 이상</u></td></tr><tr><td><u>경기도</u></td><td><u>—</u></td><td><u>5일</u></td><td><u>10일</u></td><td><u>10일</u></td><td><u>10일</u></td></tr><tr><td><u>부천시</u></td><td><u>3일 (단계적)</u></td><td><u>5일</u></td><td><u>10일</u></td><td><u>10일(+5일)</u></td><td><u>10일(+5일)</u></td></tr></table> 5.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현 소속시설 재직자 적용, 10년 이상 종사자는 현 근무시설 5년 이상과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5년 이상 경력 합산 가능하다. 6. 근속기간(5년, 10년, 20년, 30년) 도래 후 다음일부터 다음 장기근속 휴가 발생일 이전까지 휴가를 실시한다. 7.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를 제공하며 휴가 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8. 장기 근속휴가 실시 후 3년 이내 재사용 금지(분할사용의 경우 제외) * 장기휴가 적용시 경력합산은 동일 법인 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하되, 법인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⑥기타 관장이 포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근속기간	<u>1~5년 미만</u>	<u>5~10년 미만</u>	<u>10~20년 미만</u>	<u>20~30년 미만</u>	<u>30년 이상</u>	<u>경기도</u>	<u>—</u>	<u>5일</u>	<u>10일</u>	<u>10일</u>	<u>10일</u>	<u>부천시</u>	<u>3일 (단계적)</u>	<u>5일</u>	<u>10일</u>	<u>10일(+5일)</u>	<u>10일(+5일)</u>
근속기간	<u>1~5년 미만</u>	<u>5~10년 미만</u>	<u>10~20년 미만</u>	<u>20~30년 미만</u>	<u>30년 이상</u>														
<u>경기도</u>	<u>—</u>	<u>5일</u>	<u>10일</u>	<u>10일</u>	<u>10일</u>														
<u>부천시</u>	<u>3일 (단계적)</u>	<u>5일</u>	<u>10일</u>	<u>10일(+5일)</u>	<u>10일(+5일)</u>														

□ 안건사항 2 : 3분기 진행사업 및 4분기 예정사업 심의

◎ 4분기 진행 사업(신규사업) - 없음

◎ 3분기 진행 사업 및 4분기 예정사업

2026년 3분기 복지관 진행 사업	
진행 사업	◦ 7월 - 심과함께 토킹 작물 재배 및 나눔 활동 - 마.블특공대 청소년 서포터즈 계양구중독통합관리센터 선진지 견학 - 주민동아리연합 심(心)결 기공체조 한마음팀 대회 참가 및 2등 수상 - 멘토's 원더풀하트 진로적성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원더풀하트프로젝트 스트레스 완화 및 자아탐색 프로그램 ◦ 7월~9월 - 온동네 건강돌봄파트너 돌봄활동 진행 - 온동네 건강돌봄학교 '심곡동 노(老)리터' 프로그램 진행 - 심곡동주민대학 바리스타과 및 플로리스트과 정규교육 운영 - 기후위기 극복사업[무더위 쉼터] ◦ 8월 - 심과함께 ㅋㅋㅋ 연합 1인 가구 의제 관련 교육 - 2차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감사서신 발송 - 제9회 정심이신학기응원 지원 배분사업 접수 및 선정식 진행 - 주민동아리연합 심(心)결 하반기 운영 계획 수립 대표자 간담회 운영 - 온동네 건강돌봄파트너 파트너 실습교육 및 자문회의 진행 - 심곡동주민대학 바리스타과, 플로리스트과 : 자격증 필기/실기시험 진행 - 멘토's 하반기 활동 간담회 진행 ◦ 9월 - 심과함께 쿠킹 요리 대회 활동 - 마.블특공대 청소년 서포터즈 신규 회원 모집 선발 - 해!리포터 기자단 공모 프로젝트 신청 팀 선정 - 주민공모 권역별 추석행사 진행 - 조직화 실천 아카데미 1기 학기중 실습생 모집 및 실습 운영 - 주민만나기 '안녕, 심곡동' 3차 활동 진행 - 스.마.일 2학기 운영 간담회 진행 및 2학기 개강 운영 - 멘토's 심잡스 챌린지 진행(연출자·특수분장사 등 체험, 1~3차) - 원더풀하트프로젝트 2차 장학금 지급 - 직원역량 강화교육[정책의 이해 금융복지 역량강화 교육]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6년 4분기 예정 사업

2026년 4분기 예정 사업	
예정 사업	◦ 10월 - 심과함께 토크 작품 재배 및 나눔 활동 - 심과함께 하이킹 줄깅 참여자 모집(부천 권역) 및 진행 - 심과함께 1인 가구 의제 발굴 퍼실리테이션 활동 - 해!리포터 기자단 아동권리 교육 - 마.블특공대 네트워크 기관 1차 청소년중독연합캠페인(부천역 일대) - 심곡동주민대학 플로리스트과 자격 실기시험 진행 - 심곡동주민대학 플로리스트과 종강식 및 미니 작품전 진행 - 멘토's 합동활동 '백스테이지 패스포트' 공연관람 및 진로탐색 - 스.마.일 스마트 한 걸음 데이 외부활동 진행 - 하반기 위험성 평가 ◦ 10월~11월 - 직원역량강화 교육 진행[디지털역량강화교육(심화), 홍보] ◦ 10월~12월 - 커게 심신보약 한방진료 : 월 2회 부천시한의사회 소속 원장 방문, 개별문진표 따른 진료. - 우리 주민의 김치냉장고를 부탁해-김장 기획모금 및 김장행사 진행 ◦ 11월 - 해!리포터 기자단 공모 프로젝트 성과 공유회 - 마.블특공대 네트워크 기관 2차 청소년중독연합캠페인 - 우수 후원처 및 봉사단체 감사 이벤트 진행 - 주민만나기 '안녕, 심곡동' 4차 활동 진행 - 3차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감사서신 발송 - 온동네 건강돌봄학교 '심곡동 노(老)리터' 성과공유회 진행 - 멘토's '우리들의 엔딩크레딧' 홈커밍데이 및 성과공유회 진행 - 스.마.일 2학기 디지털 교육 종강 및 성과공유 진행 - 오운완 패럴림픽 진행 ◦ 12월 - 멘토's 우수 참여자·자원봉사자 감사장 전달 - 원더풀하트프로젝트 성과보고회 진행 - 심곡 산타가 쓴DAY 기획모금 사업 운영 - 기후위기 극복사업[한파 쉼터]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 기부 식품 등 제공사업 3분기 진행 사업 및 4분기 예정사업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2026년 3분기 진행 사업		
진행 사업	◦ 7월~9월	- 연합모금사업 진행
	◦ 7월~9월	- 어린이방문견학프로그램 진행
	◦ 7월~9월	- 그냥드림사업 진행
	◦ 9월	- 명절선물 기부캠페인 'give you' 사업 진행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2026년 4분기 예정 사업		
예정 사업	◦ 10월	- 명절선물 기부캠페인 'give you' 사업 진행
	◦ 10월~11월	- 어린이방문견학프로그램 진행
	◦ 10월~12월	- 연합모금사업 진행
	◦ 10월~12월	- 그냥드림사업 진행

□ 보고사항 1 : 2026년 3차 추경예산(안) 보고

2026년도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3차추경예산 세입(안)

■ 세부 내용: 사업수입 감소, 기타보조금 증가, 지정후원금 증가

(단위: 원)

세입					
항	목	2026년 2차	2026년 3차	증감	사유 및 근거
총 계		1,862,073,604	1,884,954,904	▲22,881,300	
사업수입	가족기능강화	6,600,000	5,280,000	▼1,320,000	*학교부적응학생 프로그램 -1,320,000원
	지역사회보호	8,640,000	8,640,000	-	
	복지네트워크구축	1,100,000	1,100,000	-	
	교육문화사업수입	2,000,000	2,000,000	-	
	소 계	18,340,000	17,020,000	▼1,320,000	
보조금수입	시군구보조금	735,980,000	735,980,000	-	
	기타보조금	702,634,000	724,334,000	▲21,700,000	*커뮤니티케어센터 7,500,000원 *외로움안심(안심스토어) 20,000,000원 *기타보조사업(예정) -5,800,000원
	소 계	1,438,614,000	1,460,314,000	▲21,700,000	
후원금수입	지정후원금	245,063,000	247,564,300	▲2,501,300	*월드비전 -1,100,000원 *신한위기가정지원사업(굿네이버스) -4,500,000원 *말반찬지원사업(글로벌케어) 11,165,000원 *주거안전지원사업(글로벌케어) 1,490,300원 *긴급지원금(소사본동성당) 500,000원 *그늘드림설치지원, 모니터링지원비 6,916,000원 *정읍서관학원(신학기지원 등) 3,000,000원 *온동네건강돌봄학교,스마일,해리포터기자단(이자) 30,000원 *기타외부공모 사업 -15,000,000원
	비지정후원금	50,000,000	50,000,000	-	
	소 계	295,063,000	297,564,300	▲2,501,300	
전입금	법인전입금	30,000,000	30,000,000	-	
	법인전입금 (후원금)	0	0	-	
	소 계	30,000,000	30,000,000	-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38,858,629	38,858,629	-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23,919,451	23,919,451	-	
	이월사업비	9,348,524	9,348,524	-	
	소 계	72,126,604	72,126,604	-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50,000	50,000	-	
	기타예금이자수입	380,000	380,000	-	
	기타잡수입	7,500,000	7,500,000	-	
	소 계	7,930,000	7,930,000	-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6년도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3차추경예산 세출(안)

■ 세부 내용: 인건비 감소, 업무추진비 증가, 사업비 증가

(단위: 원)

세 출						
항	목	2026년 2차	2026년 3차	증감	사유 및 근거	
총 계		1,862,073,604	1,884,954,904	▲22,881,300		
인건비	급여	532,726,830	526,373,700	▼6,353,130	*종사자 변동에 따른 감소	
	제수당	98,296,330	96,310,100	▼1,986,230		
	퇴직금및퇴직적립금	53,385,280	50,628,540	▼2,756,740		
	사회보험부담금	70,896,670	70,293,760	▼602,910		
	기타후생경비	100,000	100,000	-		
	소계	755,405,110	743,706,100	▼11,699,010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6,000,000	6,000,000	-	*회의비 180,000원	
	직책보조비	1,500,000	1,500,000	-		
	회의비	2,060,000	2,240,000	▲180,000		
	소계	9,560,000	9,740,000	▲180,000		
운영비	여비	400,000	400,000	-		
	수용비및수수료	31,404,149	31,404,149	-		
	공공요금	22,740,000	22,740,000	-		
	제세공과금	8,000,000	8,000,000	-		
	차량비	4,336,000	4,336,000	-		
	연료비	4,800,000	4,800,000	-		
	기타운영비	24,040,000	24,040,000	-		
	소계	95,720,149	95,720,149	-		
시설비	시설비	2,000,000	2,000,000	-		
	자산취득비	500,000	500,000	-		
	시설장비유지비	5,000,000	5,000,000	-		
	소 계	7,500,000	7,500,000	-		
사업비	사례관리가능	사례발굴	2,700,000	2,700,000	-	
		사례개입	8,800,000	8,800,000	-	
		서비스연계	35,600,000	67,600,000	▲32,000,000	
	서비스연계기능	가족기능강화	3,300,000	3,300,000	-	*생필품등경제적지원 -12,000,000원 (사례관리 기능의 기본생활지원으로 조정) *한방진료 -100,000원 (커뮤니티사업비로 전환) *온동네건강돌봄학교(이자소진) 10,000원
		지역사회보호	496,984,407	484,894,407	▼12,090,000	
		교육문화	7,566,000	7,566,000	-	
		자활지원등기타	3,400,000	3,400,000	-	
	주민조직화기능	복지네트워킹구축	5,100,000	5,100,000	-	
		주민조직화	60,520,000	60,520,000	-	
		자원개발및관리	13,500,000	13,500,000	-	
	푸드뱅크		45,884,000	45,884,000	-	
	푸드마켓		115,590,360	115,590,360	-	
	푸드뱅크(G푸드드림)		36,780,000	36,780,000	-	
	푸드마켓(G푸드드림)		36,780,000	36,780,000	-	
	무한돌봄		45,850,000	45,850,000	-	
	커뮤니티케어센터		10,000,000	17,500,000	▲7,500,000	*커뮤니티케어 사업비 보조금 추가지원
	그냥드림사업		51,480,000	58,396,000	▲6,916,000	*그냥드림설치지원 6,520,000원 *모니터링지원비 396,000원
	소계		979,834,767	1,014,160,767	▲34,326,000	
	잡지출	잡지출	200,000	200,000	-	
		소 계	200,000	200,000	-	
예비비및기타	예비비	1,853,578	1,927,888	▲74,310	*예비비 조정	
	반환금	12,000,000	12,000,000	-		
	소 계	13,853,578	13,927,888	▲74,310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 보고사항 2 : 후원금보고

<2026년 1월~7월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보고>

기간 : 2026년 1월 1일 ~ 7월 31일

(단위 : 원)

수입		지출		
어린이재단	1,400,000	사무비	운영비	11,223,050
결연후원금	21,680,000	사업비	사례발굴사업비	1,341,940
민간단체후원금	105,618,724		서비스연계사업비	16,899,207
일반후원금	23,030,445		지역사회보호	45,268,941
후원금(예금이자)	24,327		자활지원등기타	1,250,800
전년도이월금	37,754,188		주민조직화	16,943,083
			자원개발및관리	1,078,540
			푸드마켓사업비	5,816,900
			그냥드림사업비	6,520,000
			기타반환금	5,927
합계	189,507,684	합계		106,348,388
이 월 잔 액				83,159,296

<2026년 1~7월 후원품 보고>

구분	후원물품 수입 (점/환산가액)	후원물품 지출 (점/환산가액)	후원물품 잔량 (점/환산가액)	비고
계	6,500점 / 33,837,690원	5,451점 / 33,837,690원	1,049점/ 0원	

□ 보고사항 3 : 비품 폐기 보고

종 류	수량	내 역	사 유	방 법
사무용 비품	1개	- 푸드마켓 선풍기	- 파손	-폐기
합계	1개	-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